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가합55964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A

변론 종결2015. 5. 6.

판결 선고2015. 5.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4. 5. 8.자 증여계약과 2014. 6. 10.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던 B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3. 6. 18.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B은 2014. 5. 20.경 폐업함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국민은행의 보증사고 통지 및 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14. 6. 16. 국민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중 226,224,5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등

1) B은 2014. 4.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제102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매매대금을 2억 2,500만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6천만 원은 당시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D에게 인수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천 5백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같은 달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D는 B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으로 2014. 5. 8. 20,000,000원, 2014. 6. 10. 10,155,000원을 각 B의 모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3) 위 각 매매대금 송금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결국 2014. 5. 20.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2014. 6. 16. B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보증사고 발생이 임박한 시점에 원고 등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D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증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 부부의 소유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 부부가 B에게 취득자금 7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로서 매도대금으로 수령한 것이거나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일 뿐이고,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B의 소유로 추정되는 점, 피고의 주장처럼 B 명의의 위 등기가 피고 부부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거나 피고 부부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무렵 취득자금으로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B

사이의 관계, B의 송금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B이 피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송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14. 5. 8. 이루어진 20,000,000원의 증여계약과 2014. 6. 10. 이루어진 10,155,000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송미경

판사김국식